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62호 2013. 8. 12.(월)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596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1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600호(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606호(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11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신규위탁 】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보육정원	개원일자	위탁기간	비고
해방글어린이집	동춘동 929 풍림2차아파트 109동 102호	104.504㎡	20명	2013.11.15	2013.9.16 ~ 2018.9.15	-원장이 교사 겸직 -시간연장어린이집

○ 신규위탁 (해방글어린이집) 반편성

반 별	정 원	운영반수	비 고
계	20명	3개반	
만 0세반	3명	1개반	
만 1,2세반	5명	1개반	
만 3,4세반	12명	1개반	
시간연장반	-	1개반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개설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3. 위탁운영신청자 자격 요건

○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 개인일 경우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운영체(자)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위탁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단, 고용된 원장의 경우 제외)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5.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등
-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보 육 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취약보육(영아, 시간연장 등)아동 수요발생시 필수운영

-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시 인건비 지원 중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의 활용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위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3. 8. 6 ~ 2013. 8. 19 (14일간)
- 접수기간 : 2013. 8. 20 ~ 2013. 8. 27 (8일간)
- 접수장소 :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6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18:00)
 - ※ 공휴일 접수 및 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기간(2013.8.20~8.27)내 제출하되, 동산 등 기타 재산(은행잔액증명, 유가증권사본 등 증명서)과 부채증명(개인신용정보조회서)은 접수마감일인 2013. 8. 27일자로 발급받아 제출
- 신청자 :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신분증 지참)
 - ※ 위임장(임의 작성) 제출 시 위임 가능
- 선정심의일 : 별도 통지

7. 제출서류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0	0	0	
2.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시설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 2013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 등	0	0	0	-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내용 - 취약보육계획 2개이상 포함
3. 재정상태 및 요약서	0	0	0	
4.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0	0	0	
5.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0	0		별지 작성
6.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0			
7. 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0		
8.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0	0		
9. 2011년, 2012년 법인(단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0	0		
10. 2011년, 2012년 법인(단체) 총괄예산 결산서	0	0		
11.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0	0	0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12. 자격증사본(원본지참)	0	0	0	
13.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0	0	0	
14.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0	0	0	
15. 채용신체검사서	0	0	0	법인, 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
16. 인감증명서(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의 인감)	0	0	0	용도 : 어린이집 위탁 신청용
17. 주민등록등본			0	
18. 건물(등기부 등본-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0	0	0	재산입증자료는 공고 개시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19.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	0	0	0	개인(부부 재산)
20. 금융재산 - 예금잔액증명서(2013.8.27기준 발행분) - 부채증명서(2013.8.27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신용평가정보 중 발행)	0	0	0	- 법인(법인명의 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21. 기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0	0	0	해당자만 제출
22.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포상, 교육 등 증빙서류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표창장, 자원봉사, 보육센터 조력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0	0	0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연수구청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고시/공고란 참조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개시일 이후여야 함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신청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6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5부 제출 / 목차·쪽수 명시)

8.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공통심사기준표
-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대표및 원장전문성	운영체의시설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배점	100	40	35	10	10	5

○ 선정방법

- 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대표자, 원장 내정자) 심의 후 결정하며,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신청운영체가 전부 부적격 시에는 재공고하여 모집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며 신청자가 단수(한명 또는 한개 법인·단체)일 경우에도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내정자(발표 및 응답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설명과 심의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하되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참석 불가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

단체의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선정결과 통보

- 위탁자(체) 선정 익일 개별 통지 및 연수구청 홈페이지 게시

9. 유의사항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연수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별도통지)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불참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처리함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0. 기타 사항은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담당자(전화 032-749-775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여성발전기금운용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안 제29조 신설)
 -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위원의 해촉사유 추가 (안 제30조 개정)
 - 위원의 해촉사유 중 안 제29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고: 가정복지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Tel. 032-749-7742, Fax. 032-749-7739, www.yeonsu.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2항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부터 제40조(준용)를 제30조부터 제41조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0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이 제29조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 (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u>제29조의</u> 사유로 위촉하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제27조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30조의</u> ----- ----- -----.
제2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생략)	제2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설 ></u>	<u>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u> ① <u>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u> <u>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u> <u>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u> ② <u>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u> <u>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u>
<u>제29조</u> (위원의 해촉) 1~3 (생략)	<u>제30조</u> (위원의 해촉) 1~3 (현행과 같음) <u>4 . 위원이 제29조1항에 해당함에도</u> <u>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u> <u>공정성을 해친 경우</u>
<u>< 신설 ></u>	
<u>제30조</u> (간사 및 서기)~ <u>제40조</u> (준용) (생략)	<u>제31조</u> (간사 및 서기)~ <u>제41조</u> (준용)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60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 연수구민의 문화권 확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권 문화창작공간으로서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생활권 시민문화를 창조하는 지역거점 문화복지 시설로 구축하고자 함.
- 문화의 집 설치 목적 및 시설의 범위, 사업 및 사용허가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제1조) 및 위치(제2조)
- 시설(제4조) 및 사업(제5조)
- 운영(제7조) 및 시설의 개방(제8조)
- 사용허가 관련(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관람료 및 수강료 징수 관련(제16조,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749-7302, www.yeonsu.go.kr/ 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향유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의 집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345-42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 관람시설(소극장 등)
2. 문화 시청각 공간(미디어 부스 등)
3. 문화 교육실
4. 창작과 체험시설(어린이 미술관, 공연창작연습실, 음악연습실 등)
5. 안내와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공간 등

제5조 (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활동 정보 자료 제공
3. 제4조 각호에 의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운영요원) ①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운영지원요원,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운영지원요원의 인건비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및 급량비 등

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 및 전문 강사의 모집·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운영) ①문화의 집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개방)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구민이 활용토록 개방한다.

제9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문화의 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을 할 때

제10조(사용허가) ①구청장은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소극장 및 부대설비
2. 어린이미술관
3. 공연창작연습실
4. 음악연습실
5. 다목적 미디어 부스

③시설물 사용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사용자는 이용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11조(사용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

제12조(사용료) ①문화의 집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문화의 집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소극장과 어린이 미술관에 한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전액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무료 문화예술행사 : 50% 감면
4. 연수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교육기관이 주최하는 무료 문화예술행사 : 50% 감면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면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설비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는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

비할 수 없다. 다만,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이동식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복구 시까지 시설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철거하지 않은 설비는 운영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관람료 및 수강료의 징수) ①구청장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료 및 수강료를 관람자·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 및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7조(관람료 및 수강료의 면제) 관람료 및 수강료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제18조 (대장 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시설물 사용(대관)대장
3.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의집 시설물의 사용료 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시설물명	사용시간	사용료	기준	비고
소극장	전일	70,000원	8시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적용
	주간	40,000원	4시간	
	야간	50,000원	4시간	
	연습/준비	10,000원	4시간	◦ 소극장 부대설비 사용 제한
어린이 미술관	주간	30,000원	8시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적용
공연창작 연습실	주/야간	10,000원	4시간	◦ 20회 이상 신청할 경우, 30% 감면
음악 연습실	주/야간	10,000원	4시간	◦ 20회 이상 신청할 경우, 30% 감면
미디어 부스	주간	10,000원	4시간	◦ 20회 이상 신청할 경우, 30% 감면

- ※ 비고 1.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주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3.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으로 한다.
 4. 소극장 및 어린이미술관에 한해 냉난방비용(연료시가)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별표 2]

문화의 집 프로그램 관람료·수강료 기준(제16조 제2항 관련)

구분	금액	기준	비고
관람료	별도산정	1회	◦ 관람료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책정
수강료	30,000원 이하	1개월/프로그램 당	◦ 주1회 2시간 기준 ◦ 주1회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프로그램은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재료비 본인 부담